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/전송(02)790-8911
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/ 팀원 이승아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3267호

시행일자 2025. 3. 1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5. 3. 4. ~ 2025. 3. 9.)

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2. 이에, 2025년 3월 4일 ~ 3월 9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목 및 주요내용
1	2025. 3. 4.	제2025-42호	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○ 약제의 제조업자·위탁제조판매업자·수입자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,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한금액의 조정 신청 등 ○ 시행일 : 2025. 3. 4.
2	2025. 3. 5.	제2025-43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 ○ 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같이 변경 ○ 시행일 : 2025. 3. 4.
3	2025. 3. 5.	[고시 아님]	「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」 지침 일부개정 ○ 「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사항 반영 * 근골격계 환자군 대상질환 (다-1)중 고관절, 골반, 대퇴의 골절부위 내고정술 및 고관절의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입원 기관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○ 시행일 : 2025. 3. 1.
4	2025. 3. 5.	제2025-44호	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 ○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(운영)한 경우 요양기관* 외래 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* 의원급 요양기관(치과·한의원·보건의료원 포함), 병원급 요양기관(치과병원·한방병원 제외), 약국 ○ 시행일 : 발령한 날 시행

5	2025. 3. 5.	[고시 아님]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고시 제2024-184호) 및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 제2024-183호) 집행정지 안내 ○ 2024.10.25. 고시한 상기 2건 고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안내 *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불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, 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됨 (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)
6	2025. 3. 6.	[고시 아님]	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 ○ 연·월 단위 등 누적점검(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 산정횟수 점검 등 11항목),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(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등 8항목), 중복 점검(동일 의약품 중복점검 등 3항목), 청구 오류 점검(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등 5항목) 등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<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>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